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	2021. 12. .	
연월일	(제 회)	

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
고령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고령군수 (기획감사실장)
제출 연월일	2021. 12 . .

법무통계담당 심사필

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
고령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: 2021. 12 . .
제출자 : 고령군수

1. 개정이유

-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이 시행('18.12.14.)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원 중 국장 등이 포함되어야 하는 위원회를 찾아 자체 정비하여 조례간의 불합리한 규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.
- 각 부서별 자치법규 개정 추진에 따른 절차적 중복 등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함으로써 행정환경의 변화와 정책수요에 대응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위원회 구성원 중 국장 포함 (실과소장 → 국실과소장)
- 위원회 위원장 변경 (부군수 → 국장)

3. 일괄정비 조례안 요약 : 붙임 1

4. 개정조례안 : 붙임 2

5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 3

6. 참고사항:

가. 관련법령 등 :

나. 기타사항

(1) 입법예고 : 2021. 11. 3. ~ 11. 22. 기간 중 의견 없음

(2) 부서협의

(가) 규제영향평가 : 해당없음

(나) 부패영향평가 : 해당없음

(다)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(라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없음

일괄정비 조례안 요약

부서명	조례명	조항	개정내용		비고
			현행	개정	
기획감사실	고령군정조정위원회 조례	제2조(구성)	③ 당연직 위원은 각 <u>실과소장</u> 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	③ 당연직 위원은 <u>국소장(6급제 외)</u> 및 각 <u>실과장</u> 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	
기업경제과	고령군 지역경제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	제3조(구성)	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 1. 군의 경제관련 <u>실·과·소장</u> 2 ~ 3. (생략)	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 1. 군의 경제관련 <u>국·실·과·소장</u> 2 ~ 3. (생략)	
군민안전과	고령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	제3조(위원회의 구성)	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. 1.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(부군수) 2. 군의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<u>실·과·소장</u> 3. ~ 8. (생략)	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. 1.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(부군수) 2. 군의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<u>국·실·과·소장</u> 3. ~ 8. (현행과 같음)	

부서명	조례명	조항	개정내용		비고
			현행	개정	
건축허가과	고령군 주택 조례	제7조(공동주택지 원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)	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<u>부군수가</u> 되고, 부위원장은 공동주택 관 리업무 담당과장이 되며, 위원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	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<u>업무담당 국장이</u> 되고, 부위원장은 공동주 택 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	
건축허가과	고령군 주택 조례	제11조(위원회의 설치)	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<u>부군수가</u>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며, 위원의 구성은 군 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	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<u>업무담당 국장이</u>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며, 위원의 구 성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다.	
건축허가과	고령군 주택개량 및 한옥형 주택의 장려를 위한 지원 조례	제9조(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)	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<u>부군수가</u> 되고,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과장 이 되며, 이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<u>업무담당 국장이</u> 되고, 부위원장은 업무담 당과장이 되며, 이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

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고령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

제1조(「고령군정조정위원회 조례」의 개정)

고령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 중 “**각 실과소장**”을 “**국소장(6급제외) 및 각 실과장**”으로 한다.

제2조(「고령군 지역경제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 의 개정)

고령군 지역경제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제1호 중 “**실·과·소장**”을 “**국·실·과·소장**”으로 한다.

제3조(「고령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」의 개정)

고령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2호 중 “**실·과·소장**”을 “**국·실·과·소장**”으로 한다.

제4조(「고령군 주택 조례」의 개정)

고령군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**부군수가**”를 “**업무담당 국장이**”로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**부군수가**”를 “**업무담당 국장이**”로 한다.

제5조(「고령군 주택개량 및 한옥형 주택의 장려를 위한 지원 조례」
의 개정)

고령군 주택개량 및 한옥형 주택의 장려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 제목 “(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)”을 “(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부군수가”를 “업무담당 국장이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붙임 3]

<제1조>

「고령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구성) ① · ② (생략) ③ 당연직 위원은 <u>각 실과소장</u> 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 별로 전문적인 기술 ④ (생략)	제2조(구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<u>국소장(6급제</u> <u>외) 및 각 실과장</u> ----- ----- ④ (현행과 같음)

<제2조>

「고령군 지역경제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
개정조례안」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구성) ① · ② (생략)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 수가 임명 또는 위촉 1. 군의 경제관련 <u>실 · 과 · 소장</u> 2. 3. (생략)	제3조(구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1. ----- <u>국 · 실 · 과 ·</u> <u>소장</u> 2. 3. (현행과 같음)

<제3조>

「고령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 2. 군의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<u>실·과·소장</u> 3. ~ 8. (생략) ②·③ (생략)	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 ----- ----- ----- 2. ----- -- <u>국·실·과·소장</u> 3. ~ 8. (현행과 같음) ②·③ (현행과 같음)

<제4조>

「고령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) ① (생략)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<u>부군수가</u> 되고, 부위원장은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 다만, 안전심의	제7조(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업무담당 국장이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<p>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③ ~ ⑦ (생략)</p> <p>제11조(위원회의 설치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<u>부군수가</u>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며, 위원의 구성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	<p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~ ⑦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1조(위원회의 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업무담당 국장이</u> ----- ----- -----.</p>
---	---

<제5조>

「고령군 주택개량 및 한옥형 주택의 장려를 위한 지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9조(<u>심의위원회 구성형운영</u>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<u>부군수가</u> 되고, 부위원장은 <u>업무담당과장</u> 이 되며, 이외의</p> <p>③ ~ ⑥ (생략)</p>	<p>제9조(<u>심의위원회 구성운영</u>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업무담당 국장이</u> ----- -----</p> <p>③ ~ ⑥ (현행과 같음)</p>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기획감사실	
연 락 처	054-950-6052